

강사인사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70조 제5항에 의거하여 가천대학교(이하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강사의 임용,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‘강사’라 함은 본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1년 단위 계약을 통하여 본 대학교 학생의 교육을 맡아 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자격기준) 본 대학교 강사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. 다만, 박사학위 미 소지자로 각 전공분야의 권위자이거나 소속대학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4조(적용대상 및 범위) ① 이 규정은 강사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,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② 강사는 소속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 학칙 제16장에서 정하는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.

제5조(강사의 소속 및 소속변경) ① 강사는 학부(과), 각 대학원, 부속기관 등에 소속을 둔다.

② 재임용이나 학부(과) 또는 전공의 통폐합 등 필요한 경우 총장은 교원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의무사항) 강사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강사는 담당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르는 학생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강사는 강의계획서 작성, 성적평가 및 입력, 교육이수 등 학생교육을 위해 본 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신규임용

제7조(임용원칙) 신규강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따른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자격) 신규강사의 자격은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 규정된 강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예·체능 계열 및 기타 실무 전문 분야의 경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9조(임용시기) 강사의 신규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인력 수급 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기에 임용할 수 있다.

제10조(임용기간)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 단, 학기 중에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빙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·출산휴가·휴직·파견·징계·연구년(6개월 이하) 및 교원의 퇴직·사망·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 임용하는 강사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②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히 퇴직한다.

제11조(임용계약) ① 신규임용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며, 폐강 또는 폐과 등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를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계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
②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,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
1. 임용기간
2. 임금(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)

3. 강의시수
4. 재임용조건
5.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않는 경우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
6. 폐강시에 임용계약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급여 및 강의시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
7. 면직사유
8. 기타 복무사항

제12조(채용절차) 강사는 각 대학(원)장 또는 각 부속기관장의 요청으로 교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9.06.25.)

제13조(채용방법) ① 강사는 공개모집에 의해 채용한다.

② 공개모집으로 임용이 결정된 비전임교원 임용대상자 중 강사 임용자격 기준 적격자에 한하여 강사임용을 원하는 경우 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.(신설 2019.08.29.)

제14조(모집공고) ① 모집공고는 가천대신문 또는 본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모집공고에 관한 업무는 교무처에서 주관한다. 다만,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단과대학별로 시행할 수 있다.

제15조(제출서류) ① 강사 지원자는 각 학부(과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.

1. 지원서(소정양식 : 본교 전산망에 의해 입력 및 출력) 1부
2. 학사, 석사, 박사학위증명서(외국대학 박사학위는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 포함) 1부
3. 대표연구실적(2편) : 각 학부(과)에서 요청한 세부 자료 각 1부
4. 자기소개서 1부
5. 경력 증명서 각 1부

② 각 부서는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강사 임용대상자를 확정 한 이후 교원인사팀에 그 명단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.

1. 지원서(소정양식 : 본교 전산망에 의해 입력 및 출력) 1부
2. 학사, 석사, 박사학위증명서(외국대학 박사학위는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 포함) 1부

3-1-38~4 제3편 행정

3. 개인별심사평가조서 각 1부.
4. 임용대상자종합평가의견서 각 1부.
5. 강사 임용심사결과 종합판정서 1부.

제16조(심사위원) ① 지원자의 임용 심사 등 임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각 학부(과), 대학(원) 및 본부에서 시행한다.

- ② 심사는 해당 학부(과) 조교수 이상 교원 3인을 포함하여 단과대학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하며, 위원장은 학장 또는 대학원장으로 한다.
- ③ 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과대학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을 2차 심사한다. 2차 심사는 1차 심사의 적정성, 타당성 등을 확인 검증한다.
- ④ 본부 심사위원은 부총장, 의무부총장, 기획부총장, 연구산학부총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교무부처장, 기획부처장 중 5인 이내로 한다.(개정 2019.08.29.)
- ⑤ 2항의 해당 학부(과) 조교수 이상 교원 3인 구성이 안될 경우 유사 전공(학과)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17조(평가 및 배점) ① 강사 지원자에 대한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1과 같다.

- ② 제1항의 별표1의 적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(원)장 및 학부(과)장이 정한다.
- ③ 심사위원은 공개모집에 따른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며,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.
- ④ 기초심사 점수와 전공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를 1배 내지 3배까지 선정하여 면접심사를 시행한다. 단, 면접심사를 생략하거나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.(개정 2019.06.25.)
- ⑤ 1차 심사에 따른 임용대상자의 선정은 기초심사 점수와 전공심사 점수 및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정한다.
- ⑥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임용 대상자는 2차 심사에서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인한 후 최종 임용 대상으로 확정한다. 2차 심사에서 임용 대상으로 적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, 1차 심사에서 재심사하여야 한다.

제18조(학문후속세대의 임용) 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다르게 평가 할 수 있다.

- ② 학문후속세대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 3년 이내인 자로 정한다.

- ③ 학문후속세대의 평가는 별표1의 교육업적 평가를 연구업적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④ 학문후속세대 임용 심사평가 결과가 불리하지 않도록 학문후속세대와 기존 강사지원자 모집 분야를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.

제19조(동점자 처리기준) 공개모집 1차 심사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다.

1. 기초심사 우수자
2. 전공심사 우수자
3. 면접심사 우수자

제20조(채용기간 및 시기) ① 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본 대학교 학사력에 따른 1학기 개시일로 하며, 학기 개시 2개월 전까지 대상자를 확정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21조(임용분야 및 임용인원)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은 총장이 정한다. (개정 2019.06.25.)

제22조(임용동의심의) 각 대학(원)장 또는 각 부속기관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 임용동의심을 요청한다.

제23조(임용취소) ①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- ② 논문표절,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가 중대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24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강사에 임용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3-1-38~6 제3편 행정
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 및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각각 5년 및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본 대학교의 강사로 재임용에서 탈락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제25조(임용의 제한) 강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(재임용 포함)을 제한 할 수 있다.

1. 대학의 조교로 재직 중인 자
2. 강의에 태만하거나 교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
3. 수업만족도조사 결과가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자
4. 인사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
5. 교육비자 미취득자
6.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학사업무에 비협조적인 자
7.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
8. 재산상의 권리제한을 받고 있는 자
9.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타 총장이 강사로서 부적격이라고 결정한 자

제 3 장 재임용

제26조(재임용원칙) ① 강사의 재임용은 별표2의 강사재임용평가 심사 결과 및 수업만족도조사에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.

②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③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,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- 제27조(재임용심사위원회)** ① 강사의 재임용 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②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- 제28조(재임용절차)** ① 강사의 임면권자는 당해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강사에게 서면통지(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총장이 정한 기일까지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강사에 대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해 강사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- 제29조(재임용기준)** ① 강사의 재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(개정, 2019.06.25.)

- 가. 별표2의 강사 재임용 평가 심사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
나. 계약기간 내 수업만족도평가 결과 80점(4.0)미만이 1과목 이하이고 평균 85점(4.25) 이상
다. 계약으로 약정한 재임용 기준 충족. 단, 별도 계약으로 약정한 교원에 한함
② 재임용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피평가자가 제출하고 「수업계획서의 작성」과 「강의에 대한 학생만족도」는 본부에서 제공한다.
③ 교직과목의 경우 위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임용기준을 예외로 정할 수 있다.

제 4 장 복무 및 신분보장

- 제30조(신분보장)** 강사는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

3-1-38~8 제3편 행정

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, 권고사직이 제한되고 불체포 특권이 보장된다.

제31조(타교강의허가) 강사는 타교에 비전임교원 등으로 임용되어 강의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총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.

제32조(강의담당시수) ① 강사의 강의 시간이라 함은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② 강사의 담당시수는 학부 및 각 대학원, 부속기관 강의를 포함하여 주당 6시간 강의 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주당 9시간 까지 강의 할 수 있다.

③ 강사의 강의 시간 및 이에 따른 임금 등의 산출은 총장이 따로 정한 환산율에 의한다.

제33조(급여) ① 강사의 강사료는 강사료지급규정 및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급여는 12개월로 분할 지급한다. 단, 학기중과 방학중 등으로 구분하여 월별 차등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.

③ 강사의 급여업무는 기존의 부서에서 담당하며 그 밖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④ 타 대학의 강사로 임용되어 본 대학교에서 겸임교수 전환 시 강의 시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, 이후 강사료는 겸임교수 지급기준에 따르며, 본교에서 교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제34조(출산휴가 및 육아휴직)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.

제35조(당연퇴직)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된다.

1. 사망한 경우
2. 65세에 달한 경우(학기종료일로 면직함)
3.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 때

4. 신규임용 때 자격 또는 면허소지가 임용조건인 강사가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
5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6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7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8.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교원 임용과 관련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9.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한 때
10. 신규임용 및 재임용 등을 통해 계속하여 3년간 임용된 후 학교의 사정에 의해 재임용 거부를 받은 경우

제36조(면직)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거쳐 면직할 수 있다.

1. 사전 허가 없이 강의를 하지 않은 경우
 2. 강의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
 3.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 4. 직무의 내·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한 경우
 5. 기타 교직원 복무규정을 어긴 경우 및 징계 등에 의해 해임 및 파면된 경우
- ② 교무처장은 해당 대학(원)장의 서면에 의한 면직심사요청에 근거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후 해당 강사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37조(복무기준 적용 및 준용) ① 본 대학교 직원복무규정에서 정한 병가, 공가,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강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- ② 강사는 연구 및 그 밖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.

3-1-38~10 제3편 행 정

제38조(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5 장 보칙

제39조(기타) 강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1> 신규채용 심사항목 및 배점

구분	세부항목	설명	배점
기초심사 (40점)	전공적합성 (20점)	모집분야와 지원자의 전공이 일치하는 경우	16-20점
		모집분야와 지원자의 전공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	11-15점
		모집분야와 지원자의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	0점
	최종학위 (10점)	박사졸업의 경우	7-10점
		박사수료의 경우	5-6점
		석사졸업 이하의 경우	0-4점
	자기소개서 (10점)	강사로서의 계획제시가 우수한 경우	9-10점
		강사로서의 계획제시가 양호한 경우	7-8점
		강사로서의 계획제시가 보통인 경우	5-6점
전공심사 (30점)	교육업적 (20점)	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강의평가가 우수한 경우	18-20점
		교육경력이 1년 이상이고 강의평가가 양호한 경우	14-17점
		교육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	10-13점
	연구업적 (10점)	최근 2년간 논문, 저서 등의 연구업적이 4건 이상인 경우	9-10점
		최근 2년간 논문, 저서 등의 연구업적이 3건 이상인 경우	7-8점
		최근 2년간 논문, 저서 등의 연구업적이 2건 이하인 경우	5-6점
면접심사 (30점)	강사자질 (30점)	강사로서의 자질이 우수하고 잠재역량이 탁월한 경우	23-30점
		강사로서의 자질이 양호한 경우	16-22점
		강사로서의 자질이 보통인 경우	10-15점

※ 심사결과는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,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으로 기록 할 것.

※ 연구업적의 심사 시 예체능계열 중 음악은 연주회(발표회), 미술은 전시회 등의 실적으로, 체육은 기존 업적으로 심사한다. 예능계열이 논문, 저서 등의 업적이 있다면 심사 시 반영 한다.

※ 면접심사를 생략하거나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.(신설 2019.06.25.)

<별표2> 강사 재임용 평가 심사표 (개정 2019.06.25.)

피 평 정 자	소 속		직 위	성 명	
	대학(원)	학부(과)			
구 분	평 가 요 소		배 점	평가점수	비 고
1. 수업관련 행정업무의 충실성	수업 관련 행정업무의 기간내 처리 및 정확도		10		
2. 수업에 대한 학생만족도	학생수업평가 결과 점수 적용 평가		50		
3. 교수법	강의안 충실도 및 기타 미래지향적인 교수법의 활용		20		
4. 수업에서의 교육매체 활용	MOOC, 비디오, 컴퓨터 프로그램, CD, 슬라이드, 인터넷 Homepage, 수업보조용 가상강의실 활용여부 등		20		
합 계					
심사결과					
심사교수(날인)		(인)			

※ 심사결과는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,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으로 기록할 것.